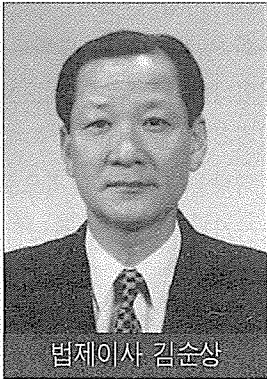


1998 치과계 전망

# 치과의사전문의제도 해결방안 모색



법제이사 김순상

치과전문의제도는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청구 결과에 관계없이 제43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선행조건의 해결과 함께 총회의 어떤 새로운 결의 없이는 전문치과의제도를 절대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이 치협의 기본 방침으로 되어 있는 만큼 대의원총회의 결의 준수와 모든 회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치과계에 있어서 초미의 관심사이며 뜨거운 감자로서 역대 집행부에 많은 심적부담을 안겨주고 35년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던 치과전문의제도는 오랜 세월동안 갑론을박을 하던 끝에 1996년 7월 31일에 (가칭)전문의추진대책위원회 11인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전문치의 자격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심리중에 있는 상태로 머물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그동안 소송담당 변호사를 선임하여 헌소에 지부의견 및 그간의 추진경위 자료를 첨부하여 심판청구에 대한 반박 답변서와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된 결과 자료를 제출하여 치과계의 진의를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개혁위원회에서 중·장기과제로 채택하여 다뤄진 이 사안에 대하여 적극 참여하여 치협의 입장을 명확히 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문제는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청구 결과에 관계없이 제4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선행조건의 해결과 함께 총회의 어떤 새로운 결의 없이는 전문치과의제도를 절대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이 치협의 기본 방침으로 되어 있는 만큼 대의원총회의 결의 준수와 모든 회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 학회인정의제도에 있어서도 전문의제도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실시가 될 경우에 국민으로 하여금 치과의료

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또한 총회결의사항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치과의료분쟁대책 강구에 있어 정부에서는 92년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준비에 착수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및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반대로 국회에서 회기내 처리 지연으로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교보생명명의 치과의사 개인 및 단체연금보험을 이용한 치과의료사고보상규정을 제정하여 가입자에 한해서 의료사고시 일정부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시 의료행위 적정성 여부 판단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분과학회에 의견조회하여 민원기관에 회신을 하여주고 있으나, 일부학회의 미온적인 태도로 회신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아예 처리를 하지 못해 협회 공신력에 문제가 파생되고 있사오니 관련학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치과의료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모은 <판례집>을 발간하여 회원들이 참고토록 하여 의료사고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회원의 의견신장과 의견옹호를 위한 치과의료제도 관계제법규의 연구에 있어서 의료법 개정을 통한 외국유학생의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있어 예비시험 및 일정수련기간제도 도입, 전문치과의제도와 관련한 치과의 특수성을 모범에 반영하고, 기타 치과관련 제반법령을 검토하여 개선점을 발췌, 필요한 법규를 개정 보완토록 수시로 당국과 협의를 거쳐 꾸준히 건의할 것입니다.